

#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



#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

# AI Tamimi & Company

## 두바이 본사 (Head Office, 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Building 4 East, 6th Floor  
Sheikh Zayed Road  
PO Box 9275  
Dubai, UAE

T: +971 4 364 1641  
F: +971 4 364 1777  
E: info@tamimi.com

## 젯다 사무소 (Jeddah Office) - 사무소장: Ahmed Basrawi

King's Road Tower, 11th Floor  
King Abdulaziz Road  
Al Shate'a District  
P.O. Box 140303  
Jeddah, Saudi Arabia 21333

T: +966 12 263 8900  
E: info@tamimi.com

## 알코바 사무소 (Al Khobar Office) - 사무소장: Grahame Nelson

Zamil House, 9th Floor  
Prince Turkey Street  
Corniche District  
P.O. Box 32348  
Al Khobar, Saudi Arabia 31952

T: +966 13 821 9960  
E: info@tamimi.com

## 리야드 사무소 (Riyadh Office) - 사무소장: Abdullah Al Tamimi

Sky Towers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Olaya District  
P.O. Box 300400  
Riyadh, Saudi Arabia 11372

T: +966 11 416 9666  
E: info@tamimi.com

**Design:** Shriya Sanjeev and Dania Estrada

Published by AI Tamimi & Company © 2020

The content of this publication is not intended to be a substitute for specific legal advice. Except for personal use, and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law,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whether in hard copy or in digital or electronic for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AI Tamimi & Company. For more information on permission to reproduce this publication, please contact us at [info@tamimi.com](mailto:info@tamimi.com).

# Key Contacts

## Husam Hourani

Senior Partner  
h.hourani@tamimi.com

## Abdullah Al Tamimi

Partner, Head of Litigation – Saudi Arabia  
a.tamimi@tamimi.com

## Ahmed Basrawi

Partner, Head of Litigation – Jeddah  
a.basrawi@tamimi.com

## Bandar Al Hamidani

Partner  
Corporate Commercial  
b.alhamidani@tamimi.com

## Emad Salameh

Partner  
Litigation  
e.salameh@tamimi.com

## Grahame Nelson

Partner, Head of Office – Al Khobar  
g.nelson@tamimi.com

## Hesham Al Homoud

Partner, Head of Corporate Structuring – Saudi Arabia  
h.alhomoud@tamimi.com

## Nick O'Connell

Partner, Head of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Saudi Arabia  
n.oconnell@tamimi.com

## Mostyn Rischmueller

Head of Marketing & Business Development – Saudi Arabia  
m.rischmueller@tamimi.com

# Korea Group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건설, 인프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AI Tamimi & Company는 중동에서 한국기업들의 성장을 주목해 왔으며 다양한 한국 고객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전담 팀 “Korea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Korea Group은 2012년부터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 정부기관, 공기업,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고객들에게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률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 결과, 현재 120여개 이상의 한국업체로부터 성실한 법률 고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orea Group은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3인 및 전문스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동 법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기업자문에서부터 대형 거래 및 각종 분쟁의 중재 및 조정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중동지역의 전문인력과 함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Korea Group Key Contacts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James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윤덕근 변호사 Dukgeun Yun**  
Senior Associate  
dg.yun@tamimi.com

**강윤정 연구원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박인혜 연구원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 Table of Contents

<b>8</b>	About Us
<b>10</b>	Foreword
<b>11</b>	Foreword by KOTRA
<b>12</b>	Legal System
<b>16</b>	Saudi Vision 2030
<b>26</b>	Exporting to Saudi Arabia
<b>30</b>	Setting up in Saudi Arabia
<b>38</b>	Taxation
<b>44</b>	Competition
<b>48</b>	Employment
<b>54</b>	Government Contracting
<b>58</b>	Anti-Corruption
<b>64</b>	Stock Market
<b>68</b>	Banking & Finance
<b>78</b>	Insolvency
<b>82</b>	Real Estate
<b>90</b>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b>94</b>	Intellectual Property
<b>100</b>	Dispute Resolution

#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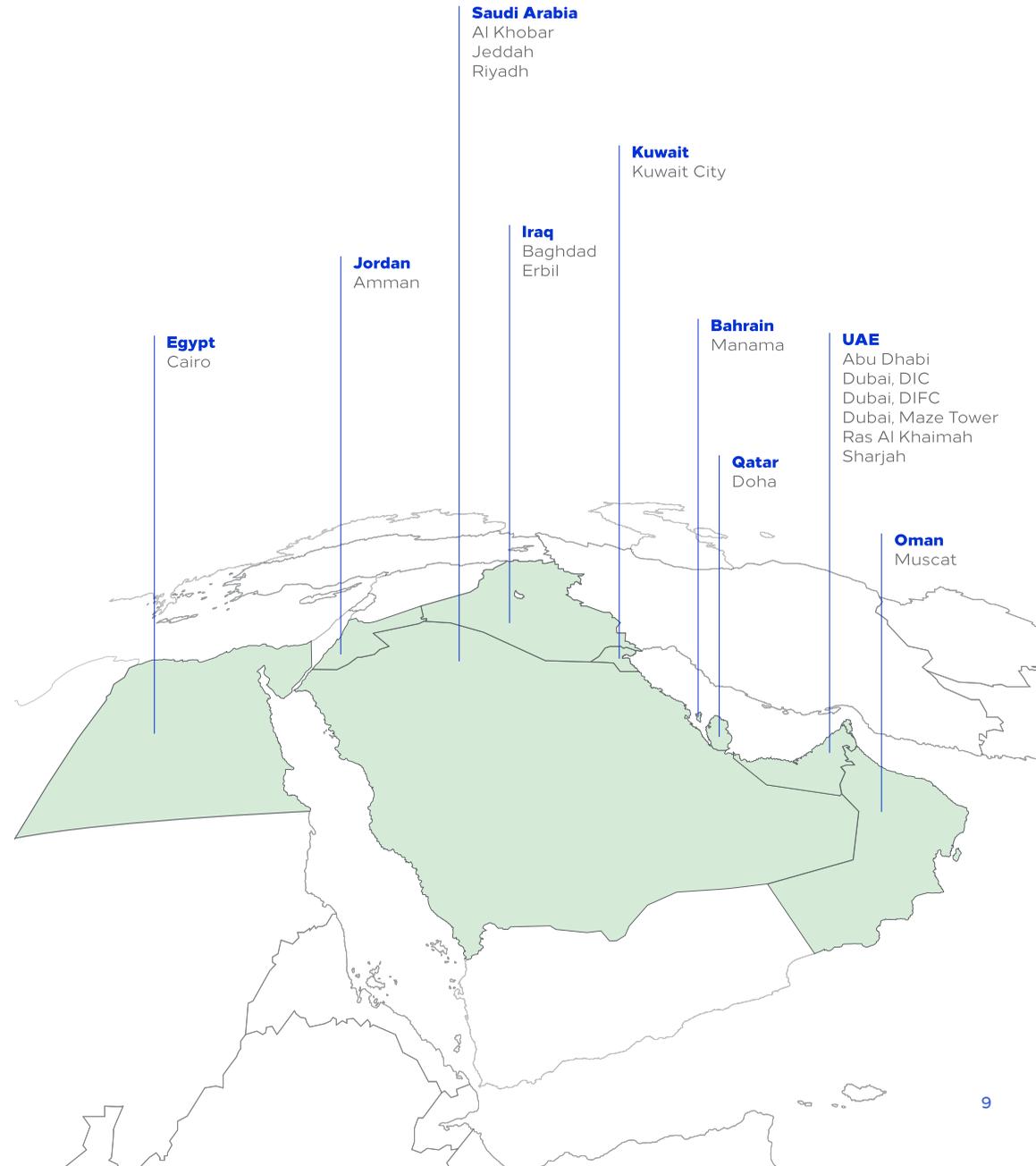
중동 지역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최대 로펌인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의 사업 환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 법률자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는 1989년 UAE에 설립된 이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로펌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중동 지역에 대한 전문성, 경험,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리야드에 첫 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지속적인 확장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젠타와 알코바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로펌으로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여성변호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환경과 법률·규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사무소는 각 국에 위치한 사무소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현지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oreword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경제는 석유에 기반을 두고,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국 상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완화, 외국인투자 장려, 특정 산업의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 대책모색 등 향후 국가 발전에 로드맵 역할을 할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Saudi Arabia's Vision 2030)"을 공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에는 제한적인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 일부 부문 민영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관광, 의료, 운송, 인프라, 광업, 농업 등을 우선순위로 삼아 다양한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이행은 사우디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소를 개소한 AI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저희 AI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운영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개인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새로운 법인설립 시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내 최신 법제 정보 및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AI Tamimi & Company는 여러분 모두의 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ssam Al Tamimi**  
Chairman  
AI Tamimi & Company



**Samer Qudah**  
Managing Partner  
AI Tamimi & Company

# Foreword by KOTRA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주요 우방국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가이자, 최대 건설플랜트 수주대상국으로써 1970-80년대 제1차 중동 붐을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사우디내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해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연 내지 취소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주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유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야심차게 수립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30" 및 "National Transformation Plan" 의 과정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기존의 건설분야에 국한된 협력이 아닌, 제조, 보건 의료, ICT, 방산,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문화, 관광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협력이 가능하기에 현재의 사우디는 우리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은 현지 법률 및 투자환경에 정통한 AI Tamimi & Company에서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우디내의 사법체계를 포함하여, 최신의 회사법 관련 동향 및 투자 환경, 분야별 법률 내용을 담은 "Doing Business in KSA" 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디 본 가이드북이 사우디에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해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관장 윤여봉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체계 (Legal System)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체계 (Legal System)

## 샤리아 율법 (Shari'ah)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로서, 통치기본법 (Basic Law of Governance)에 따라 Sunnah (선지자 Muhammad의 사상)과 신성한 코란 (Holy Qur'an)을 헌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샤리아 (Shari'ah) 율법을 구성합니다.

## 국정운영 (Governance)

사우디아라비아는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이 통치를 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 (Shoura Council)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슈라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지도자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Salman 국왕은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의 구성원이며, 이러한 각료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다양한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지역은 주지사 (Governor) 또는 왕자가 시의회와 협의하여 관할하며, 시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과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 사법부 (Judiciary)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샤리아 율법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사법부는 통치기본법과 사법부 관할법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 계약체결 (Contracting)

사우디아라비아 내 계약체결 및 집행은 샤리아 율법을 따르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통용되는 샤리아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내용이 사우디아라비아 법과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경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계약당사자는 기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상업거래와 관련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종교

이슬람교

###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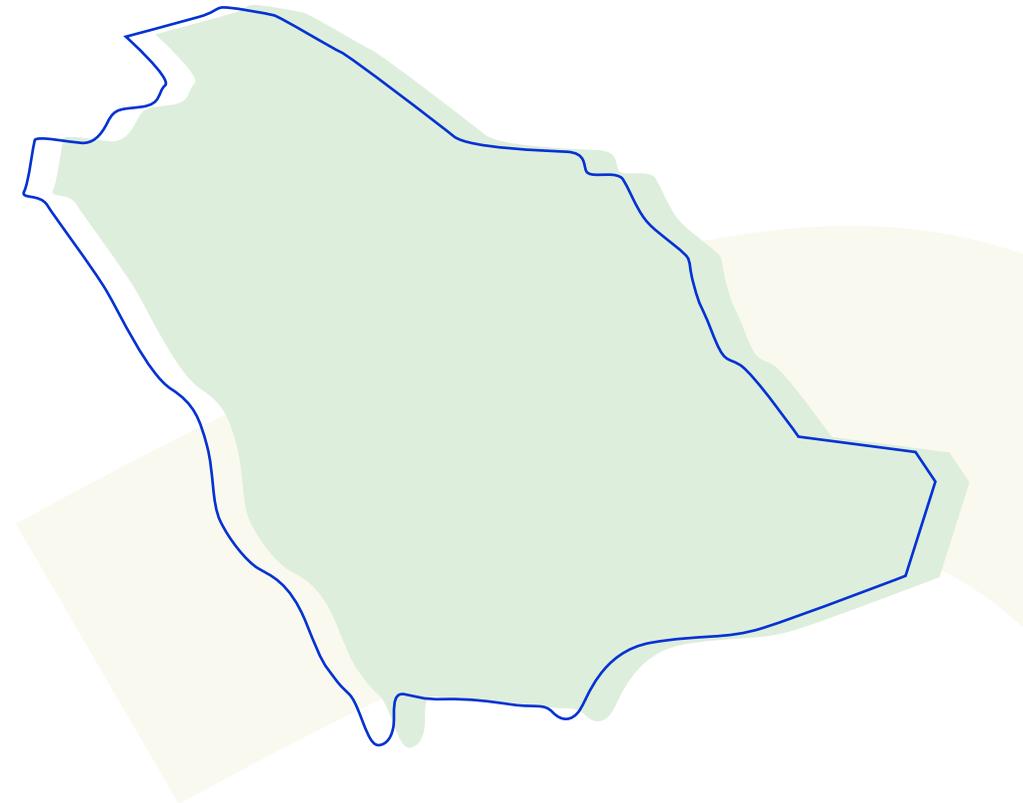
공식언어는 아랍어이지만, 비즈니스 시 영어가 널리 통용됩니다

### 인구

약 3,300만명  
(2017년 추정치 기준)

### 화폐단위 (통화)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SAR)이 공식 통화로, 달러 대비 고정환율을 택하고 있으며 USD 1은 SAR 3.75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Saudi  
Vision 2030)**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Saudi Vision 2030)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경제 다각화를 모색하고, 저유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Saudi Vision 2030; 이하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개혁계획 202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이하 "NTP")을 발표하였으며, 총 24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부처의 다양한 전략적 구상을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및 NTP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투자뿐만 아니라 다수 공기업의 민영화 및 산업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주택·스포츠센터·공공시설 설립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육·헬스케어·지자체서비스·에너지·환경·제조업·오일 및 가스·기술·운수업 부문의 개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과 NTP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발빠르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부문에서의 민영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 및 채권자 등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로 합작회사 (Joint Ventures) 혹은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이하 "PPP")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조만간 PPP를 관할하는 신규 법령공표가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NTP 시행에 투자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TP 시행 (2016 - 2020)	예상비용	비율
정부	SAR 2,680억 (한화 약 78조원)	60%
민간부문	SAR 1,790억 (한화 약 52조원)	40%
합계	SAR 4,470억 (한화 약 130조원)	100%

사우디 비전 2030과 NTP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화 (Privat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 내 다양한 정부자산의 민영화
- **사우디 석유공사 (Saudi Aramco) 기업공개 및 해외투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소유한 사우디 석유공사의 지분 5% 상장 및 공모금액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이하 "PIF")에 투자하여 PIF를 USD 3조 (한화 약 3천조원) 규모의 글로벌 국부펀드로 육성
- **민간부문 투자 (Private Sector Investment)** — 에너지·헬스케어·주택·지자체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GDP의 민간부문 기여도를 40%에서 65%로 증대
- **해외투자 (Foreign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기존의 SAR 300억 (한화 약 8조원)에서 SAR 700억 (한화 약 18조원)으로 증대 및 투자승인기간 단축
- **방위산업 (Defence Industry)** —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장비 지출의 50% 현지화 달성
- **광업 (Mining Industry)** — 2020년까지 SAR 970 억 (한화 약 28조원)에 달하는 대폭 성장 및 9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통신산업 (Telecommunications Industry)** — 고속광대역 (high speed broadband)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망 구축 및 개발
- **운수업 (Transportation)** — 국내·외 인프라구축을 통한 물류허브 (logistics hub) 조성
- **오일 및 가스 (Oil & Gas)** — 현지화 수준을 현재의 40%에서 75%로 상향 및 가스보급망 구축을 통한 국내 가스생산량 증대
- **재생에너지 산업 (Renewable Energy Industry)** —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참여 독려
- **소매·무역부문 (Retail and Trading Sector)** —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수백만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 (Education)** — 민간부문의 참여 장려를 통해 비정부기관 내 취업자 중 고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율을 6%에서 15%로 증대
- **헬스케어 부문 (Health Sector)** —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지출비중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증대 및 PPP 등 민간부문의 참여 장려

- 주택 (Housing) 부문 (NTP 중 정부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 — 주택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장려를 위한 특별면허 (Fast Track License), 프로젝트 파이낸싱 패키지 (Special Finance Package) 제공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소유부지 내 주택건설을 위한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 Jubail – Yanbu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for Jubail and Yanbu; 이하 "RCJY") (NTP 중 주택 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예산규모를 차지) —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구조의 다양화·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제품군 증대

2018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 (Privatization Programme; 이하 "Delivery Plan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Delivery Plan 2020은 비전 2030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설립된 민영화 및 PPP 센터 (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 Public Private Partnership)가 비전 2030에서 추진 예정중인 민영화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Delivery Plan 2020은 202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기업은 비전 2030, NTP 그리고 Delivery Plan 2020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 집중투자부문 (Key Sector) - (1) 광업 (Mining)

사우디 비전 2030과 NTP는 2020년까지 SAR 970억 (한화 약 28조원)에 달하는 대폭 성장 및 9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업부문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인산염과 보크사이트, 금, 은, 납, 아연, 구리, 철광석, 희토류 등 상업적 가치를 지닌 광물 매장층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광물자원의 거대한 매장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는 방대한 양의 지질정보, 지도, 보고서 등 광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광업부문의 투자장려를 위해 신규 광업법 (Mining Code)을 공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조광료 (mineral royalties)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물 탐사 시, 비개발면허 (Non-exploitation License)와 개발면허 (Exploitation License)가 필요하며, 해당 면허는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개발면허에는 2년간 유효한 정찰·자원수집 면허 (Reconnaissance and Material Collection Licenses)와 3년간 유효한 탐사면허 (Exploration Licenses)가 포함되며, 탐사면허의 경우, 탐사허용지역은 반경 100 제곱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 개발면허에는 채굴·채석 면허 (Mining and Quarry Licenses)가 포함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은 모두 30년입니다. 단, 소규모의 채굴면허는 20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건설자재를 위한 채석면허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탐사면허와 개발면허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광업회사이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Ma'ade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Ma'aden 지분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PIF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Tadawul)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집중투자부문 (Key Sector) - (2) 교육 (Education)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근간인 청년층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국민이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며, 독해력, 문제해결능력, 기술·인성 개발 등에 초점을 둔 현대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부문의 개혁내용은 NTP의 전략적 목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등 교육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 교사의 전문성 증진, 교육부문의 생태계 개선, 교사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부문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 디지털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사 및 학생에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민간부문의 공교육 부문 (유치원 포함) 투자 장려
- 학교 설립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 2,000개의 공립 학교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학교모델 (Independent Schools Model) 개발



- 대학 기 졸업자가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실용적인 시스템 구축
- 이를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교육부문에서의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사립대학교 설립, 유치원 및 탁아소 설립, 대학 기 졸업자의 고용증대를 위한 직업훈련 제공,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 교육부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미 운영중인 공·사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부지 유지·보수, 급식소 운영, IT 서비스 제공 등 교육부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설립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참여가능범위는 매우 명확하지만, 실제로 교육서비스 제공 시에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장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민간부문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거나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여 교육서비스 부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전통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정된 프랜차이즈 모델도 이러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교육부문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 집중투자부문 (Key Sector) - (3) 헬스케어 (Healthcare)

헬스케어도 사우디 비전 2030의 집중투자부문에 해당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지출비중을 25%에서 35%로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수익은 SAR 30억 (한화 약 8.9천억원)에서 SAR 40억 (한화 약 1.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도 헬스케어 부문의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SAR 23억 (한화 약 6.8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NTP는 다음과 같이 헬스케어 부문의 전략적인 목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보기술 및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부문의 효율성 향상
- 간호직군 및 의료지원직군의 취업장려를 위한 유인책 제공
-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주요 병원 내 환자 입원 시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내 인프라시설, 시설 관리, 안전 지침 (safety standards) 개선
- 환자의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관련 시스템 개선

-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
- 비만 및 흡연에 중점을 둔 공공보건서비스 개선
- 외래환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개선
- 상비약 (basic medicines)의 충분한 공급 보장

사우디 비전 2030은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NTP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설 의료기관 설립
- 의료보험 증대
- 정보기술의 사용 증대
- 보건교육 제공
- 헬스케어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제공
- 헬스케어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
- 의약품 현지제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외국인은 병원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은 소유·관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신규 병원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개인·기관과의 PPP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주는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경우, 정부 소유의 의료기관 및 국립병원에서는 무료 진료의 혜택을 받습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내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고, 헬스케어 부문에도 PPP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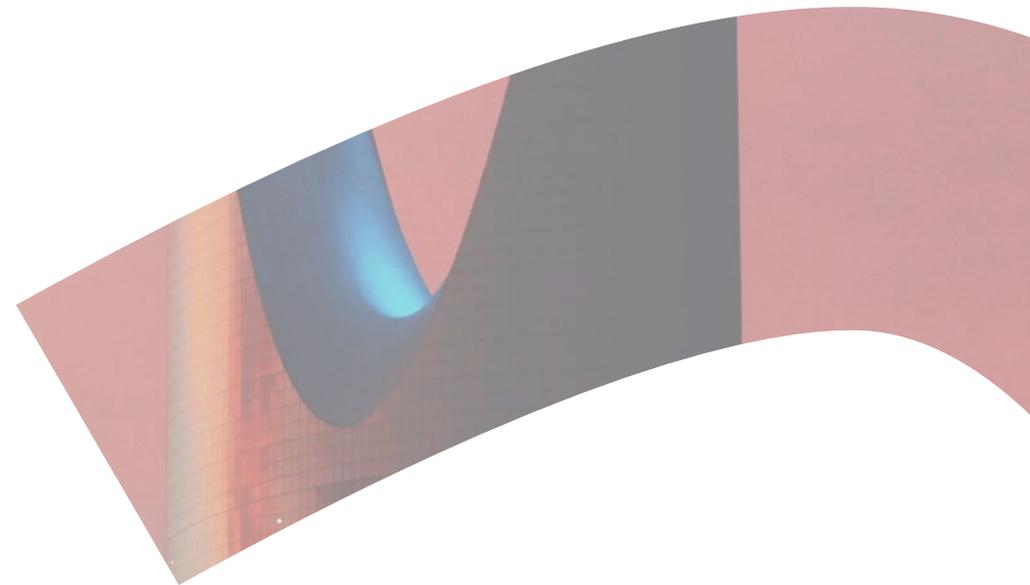
헬스케어 부문의 디지털화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202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70% 이상이 디지털화된 의료기록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장비, 소프트웨어, 원격진료 솔루션 등 다양한 의료기술의 활용을 통해 의료기관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 및 직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기관과 협업을 하거나 PPP를 통해 직업훈련·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인가받은 의료기관과의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적절한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국내에서 의약품 생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 제약업체를 상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PPP를 통해 자국 내에 의약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제약업체는 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입찰 시 공급 수량 확정 등의 혜택을 받거나 향후 제조공장 설립 시, 현지 유통업체 없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 내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은 외국인투자자가 의료기기·장비의 제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기·장비는 해외에서 제조 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됩니다. 보건부는 현지 제조업체가 외국업체와 협력을 맺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부가 일정량의 구매를 보장하거나 보건부에서 발주하는 공급계약을 위한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경우, 현지 유통업체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기·장비를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Exporting to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Exporting to Saudi Arabia)

## 커머셜 에이전트 (Commercial agencies)

외국기업이 “커머셜 에이전트”로 잘 알려진 유통업체 (distributorship), 대행업체 (commercial agency) 또는 프랜차이즈 (franchise) 등을 통해 제품 수입 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자사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들 또는 사우디 국적 개인들이 100% 소유하고 관리하는 업체들만이 커머셜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커머셜 에이전트는 제품의 품질보증은 물론, 유지·보수·부품공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커머셜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해당 에이전트는 사업활동 개시 6개월 내에 사우디아라비아상공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 Investment; 이하 “MOCI”)의 커머셜 에이전트 관할 부서에 해당 계약을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에이전트는 외국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 만료·해지 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은 없지만, 외국 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근거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커머셜 에이전트가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 에이전트 등록 해지를 거부·지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에이전트의 등록 해지 이전에도 새로운 커머셜 에이전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Export and im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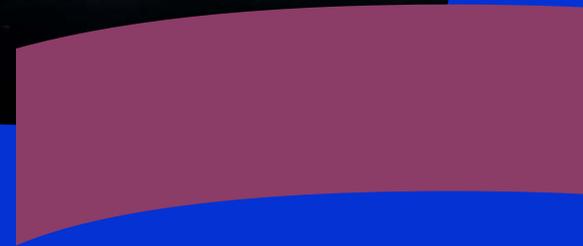
외국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품목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과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관련서류 준비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입 에이전트 (import agent)를 선임하게 됩니다.

사우디 표준청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sation; 이하 “SASO”)은 라벨부착 및 시험·검사 등 수입품목들의 국가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관절차를 위해 모든 수입품목들은 “적합성 인증검사제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적합성 인증서는 원산지 (country of origin) 공인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적합성 인증서 제출 시, 수출품목이 SASO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장비 등 일부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 설립  
(Setting up in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 설립 (Setting up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설립 시, 관련 당사자는 사업유형, 산업군, 세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GCC 국가를 제외한 모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인투자면허 (Foreign Invest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관련규정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

사우디아라비아 내 투자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00년에 공표된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투자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Anti-Concealment Law를 위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이름, 면허정보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 투자 (fronting arrangement)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등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운영 (commercial operations)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이하 "SAGIA")으로부터 외국인투자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요건 등 상세내용은 SAGIA 홈페이지 (www.sagia.gov.s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허신청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 예정인 회사의 형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모든 신청서류를 SAGIA에 제출하고, 해당 서류가 면허신청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4주 안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활동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면허발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SAGIA는 면허 발급 소요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에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감사자료 (최소 1년 이상)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특수목적기업 (special purpose vehicle)을 통해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일부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활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기업만 투자가 가능하고, 'Negative List'로 분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시행 및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시장개방을 위해 'Negative List'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결정 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외국인투자자에 허용·금지된 사업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Negative List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유 탐사·시추·생산
- 군사장비 및 군복 제조
- 군 부대 식품납품
- 보안 및 경비 서비스
- Makkah와 Madinah 지역 내 부동산 투자
- Hajj (무슬림에게 의무적인 성지순례) 및 Umrah (무슬림의 비의무적인 자발적인 성지순례)와 관련한 관광서비스
- 직원채용 관련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 및 출판 (\*일부 예외가 존재함)
- 독점판매권, 대행업체, 프랜차이즈
- 오디오 및 미디어 서비스
- 육로를 통한 운송수단 (\*일부 예외가 존재함)
-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응급구조 등과 관련한 서비스
- 양식업
- 혈액은행, 약물관리센터, 격리시설

외국인투자자는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업활동에 대해 SAGIA의 요구사항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100%에 달하는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은행·금융 등 특정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기업의 최소 지분 요건이 존재합니다.

특정 사업활동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보유 개인·기업의 최소 지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활동	외국인의 최대지분보유 한도
서비스	100%
제조업	100%
도·소매 무역업	75%*
전문서비스	75%**

\*SAGIA는 외국기업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한 무역회사 설립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AR 3천만 (한화 약 90억원)에 달하는 최소자본금과 향후 5년 이내에 SAR 1.7억만 (한화 약 448억원) 추가투자 및 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AGIA는 외국기업의 100% 지분보유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허가를 공표했습니다.

SAGIA로부터 면허 발급 후, 외국인투자자는 MOCI로부터 승인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설립가능한 회사유형 (Forms of legal entities)

외국인투자자는 사업내용, 세금,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다양한 유형의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공표된 신규 회사법 (Companies Law)이 기존의 법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변경내역을 본 법률가이드에 포함하였으며,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립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회사 유형입니다.

### 외국기업의 지사 (Branch Office)

외국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파트너 (개인 또는 기업) 없이 회사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지사는 비교적 빠르게 설립이 가능하고, SAGIA 허가 하에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사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SAR 500,000 (USD 135,000/ 한화 약 1.5억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계약체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사의 경우, 본사 (모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사의 사업활동은 본사가 영위하는 사업활동으로 제한되며, 본사는 지사의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LLC는 광범위한 사업활동에 적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파트너 (개인·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가 선호하는 회사 유형입니다.

LLC의 사업 활동은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및 SAGIA에서 발급한 외국인투자면허에 명시된 활동들로 제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설립되는 모든 LLC는 해당 법인명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고, 직접 스폰서가 되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SAGIA로부터 산업 면허 (industr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는 일부 LLC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개발기금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사업자금과 관련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LLC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SAGIA 또는 MOCI에서 외국인투자면허 승인과정 시에 결정합니다. SAGIA의 최소 요건이 없는 경우, LLC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해당 기업의 사업활동과 초기 5년 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상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LLC는 최소 1명부터 최대 50명에 이르는 주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오직 한 종류의 주식만 보유가 가능하며, 의결권의 차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LC는 주식공모를 할 수 없으며, 은행·보험 등과 같은 특정 사업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분 이전은 기타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취권과 관련 당국의 승인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LLC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본인이 투자한 자본금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6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는 LLC의 손실액이 자본금의 50% 이상에 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LLC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 주주가 개인적으로도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LLC는 매니저 (manager) 또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보유할 수 있고, 주주가 20명 이상인 LLC는 경영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General Manger의 경우, Iqama 등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외국인을 General Manager로 임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이하 “JSC”)

JSC는 주식공모 가능여부에 따라 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open)”과 불가능한 “폐쇄형 (closed)”으로 나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인 Tadawul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은 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JSC이며, 은행·보험 등 특정 사업활동은 JSC 형태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JSC의 최소 자본금은 SAR 500,000 (USD 135,000 / 한화 약 1.5억원)이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일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주주를 보유해야 합니다.

JSC 설립자가 보유한 주식은 JSC의 재무제표 발행연도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JSC의 주주들은 LLC의 주주들과 같이 유한책임 구성원이 되며, JSC의 부채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JSC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신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 임시법인등록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 이하 “TCR”)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발주한 계약인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TC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CR 등록 과정은 지사와 유사하지만, 외국인투자면허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TCR 발급은 정부 또는 준정부계약을 수주한 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계약서 또는 낙찰서 (letter of contract awar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TCR의 가장 큰 단점은 낙찰된 계약 및 프로젝트에서 허용하는 사업 활동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Technical & Scientific Services Office; 이하 “TSSO”)

외국기업은 TSSO를 설립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에 과학·기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SSO는 상업활동 또는 수익창출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술정보 및 시장·기술관련 조사만으로 사업활동이 제한됩니다.



TSSO의 설립과정은 지사와 비슷하지만, 외국인투자면허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TSS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최소로 고용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스폰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TSSO에서 고용해야 하는 기술전문가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당국 승인 없이 제한 인원 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 전문서비스 회사 (Professional Services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가능한 회사유형은 다양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건축·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은 전문서비스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은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과 혼동되어서는 안되고, EPC 기업은 반드시 LLC 또는 JSC 형태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전문서비스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협회 (Saudi Council of Engineers)에 가입한 엔지니어 등 특정 분야의 면허를 지닌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개인·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문서비스 회사는 LLC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LLC보다는 파트너십 형태에 가깝습니다. 전문 서비스 회사의 파트너들은 회사의 부채나 의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며, 당사자간 책임의 배분이 가능합니다.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 시, 원칙적으로 SAGIA에서 승인받은 외국인투자면허 및 최소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 실적이나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은 전문서비스 회사 지분의 7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등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지분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므로 회사 설립에 대한 별도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 (Taxation)



# 과세 (Taxation)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및 외국기업의 지사는 관련 세금납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 (General Authority for Zakat and Income Tax)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의 법인은 종교세의 일환으로 2.5%의 자선용 세금 (Zakat)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지분 및 기타 자산 등 과세 가능한 내역 (Zakat-able Base)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외국인 파트너/주주를 보유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은 일반적으로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석유화학부문의 경우, 원유 생산 시 85%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소득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capital gains)의 경우 법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40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 (non-Saudi employees)의 월 급여 (기본급, 주거지원금, 상여금 포함)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월 급여의 12%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산출은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 SAR 45,000 (한화 약 1,4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월 1일 부로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2017년에 GCC 회원국이 합의한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 재화 및 용역 공급 시, 영세율 (zero rated)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재화 및 용역 공급 시에 부과되며, 이는 재화 및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GCC 역외로의 재화 및 용역 수출 (the export of services and goods to recipients outside the GCC)
- 재화 및 승객의 국제운송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goods and passengers)
- 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급 (the supply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 투자용 귀금속의 공급 (the supply of investment grade precious metals)

### 2.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

- 차익 기반의 금융서비스 공급 (the supply of margin based financial services)
- 생명보험 (the supply of life insurance)
- 거주용 부동산 임대 (leases of residential real estate)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경우 연간 재화 및 용역 공급액이 SAR 375,000 (USD 100,000 / 한화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기업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공급액이 SAR 187,500 (USD 50,000 / 한화 약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비거주자는 재화 및 용역 공급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세는 5% (배당금, 이자, 용역대금, 지사의 해외 송금 등)에서 20% (로열티,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정 용역대금 지급 등)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주하는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비 거주 개인·기업을 상대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 관세 (Customs Duty)

관세율은 재화의 유형과 수량 별로 다르게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모든 재화의 경우, CIF 조건 (보험료, 운임료 포함) 을 적용한 금액의 5%가 관세율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재화의 경우, 5% 보다 높은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재는 면세 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 (Excise Tax)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6월 11일부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생산된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 제품은 현재까지 담배 (세율: 100%), 탄산음료 (세율: 100%), 에너지음료 (세율: 50%)이며,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제품의 소매가격과 정부에서 공시하는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외곽에 위치한 미개발 토지에는 2.5%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법 (Competition)



# 공정거래법 (Competition)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공정거래법 (Competition Law)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공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우디아라비아 공정거래위원회 (Competition Council)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100% 정부 소유의 국영기관을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 장려 및 독점행위 규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 간 협의내용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협의 및 계약 체결 금지
- 시장 내에서 일부 기업의 독점권 확보 제한
-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공정거래법은 경쟁기업 간에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관행, 계약 (서면, 구두, 암시 등) 또는 합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지행위가 시장 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 반 경쟁행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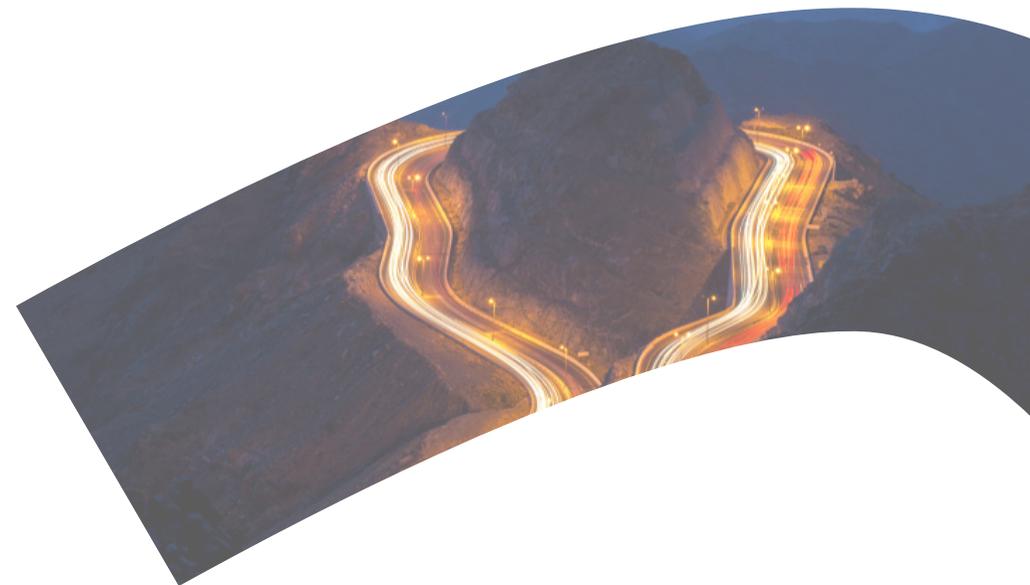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적인 지위 (Dominant Position)”란 12개월 내에 시장에서의 총 매출의 최소 40%를 점유하거나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언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통제
- 재화 및 용역의 원활한 공급 방해
- 시장 진입 및 퇴출 장벽
- 경쟁사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행위
- 시장 분할
- 소비자 차별
- 자사의 소비자가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특정 재화 및 용역 구매를 조건으로, 해당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은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권·경영권 취득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Economic Concentration)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상세히 다루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승인 거부와 관련한 특별한 공시가 없을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재량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위반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 (Employment)



# 고용 (Employment)

## 사우디제이션 (Saudization)

더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주요 동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인 사우디제이션 (Saudization)은 Nitaqat Programme이라 불리며,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사회개발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의 핵심계획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별 유형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최소 채용인원이 존재하며, 이는 법인 유형, 산업, 직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Nitaqat Programme을 통해 고용주는 사우디제이션 달성 정도에 따라 특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tinum과 Green으로 분류된 기업은 외국인 고용 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Yellow 또는 Red로 분류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신청 및 근로 허가 취득 시 많은 제약을 받고, 해당 근로자들이 Platinum 또는 Green에 속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고용 (Employment of Foreign Nationals)

외국인은 관련 정부부처에서 사전승인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여권발행국가 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고용비자 (Employment Visa)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근로허가증과 거주허가증 (Iqam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거주허가증은 사우디아라비아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숙소 계약 등 현지 체류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GCC 회원국 국적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별도의 고용비자 없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고용비자를 취득 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시간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초기 단계에서 고용비자 대신 상용비자 (Business Visit Visa)를 발급받아 기업의 핵심 외국인근로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상용비자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법 (Labour Law)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은 2005년에 공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을 거쳐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법으로 자리잡았으며, 해당 법은 노동사회개발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에서 관할합니다. 실제로, 고용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해지, 연차, 정년퇴직 연령,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최저연령 (현재 14세 이상)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상의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Probation):** 수습기간이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고용주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의료보험 (Social and Health Insurance):**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보장제도 (Social Insurance Regulations)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매달 사회보험청 (General Organisation for Social Insurance; 이하 "GOSI")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며,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에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연차 (Annual Leave):** 연차는 근로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하에서 근로자에 21일의 연차 (유급)가 주어집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일의 연차 (유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End of Service Benefits):** 고용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첫 5년간은 매년 월 급여의 1/2,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 시, 고용주의 부당해고 또는 근로자의 사직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해지 (Term and Termination):**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고용계약은 기간제계약과 무기한계약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보유자만 해당)으로 나뉩니다. 무기한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합법적 사유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역월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계약해지통지는 최소 60일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 상용 비자 (Business visit visa)

GCC 국적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사전에 방문비자 (Visit Visa)를 취득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 등록된 현지 기업에서 발급한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가 체류 중인 국가 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별로 비자 신청과 관련한 특정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개인은 최대 1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는 반드시 입국 이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조달  
(Government  
Contracting)**





# 정부조달 (Government Contracting)

2006년에 공표된 정부입찰 및 조달법 (Government Bids and Procurement Law)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으로의 재화 및 용역 공급을 관할하며, 군수장비 공급, 특정 공급자를 통해서만 조달이 가능한 공급계약, 일부 자문·기술 서비스와 같은 특수한 계약은 입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입찰 및 조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한 입찰은 공식적으로 발표 및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입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입찰은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 - 2%에 달하는 은행보증액을 필요로 하며, 입찰공시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입찰참가업체가 해당 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게 되면, 은행보증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최종낙찰자는 낙찰 확정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5%에 달하는 은행보증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불한 은행보증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후순위 업체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 모든 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공식언어는 아랍어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주관하며, 영문본이 존재하더라도 해석 시 아랍어 내용이 항상 우선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 금액이 SAR 5,000,000 (USD 1,300,000/ 한화 약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정부기관은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해당 계약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은 사전에 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기관은 계약범위 내에서 최대 10%까지 증액하거나 2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약대금 지급, 계약만료·연장, 위약금 등의 내용은 모두 정부입찰 및 조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 정부의 채무 불이행 (default) 시, 시공사는 보상위원회 (Compensation Committee)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는 법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관협력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관할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민영화·PPP 센터 (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 부정부패 방지 (Anti-Corruption)



# 부정부패 방지 (Anti-Corruption)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가들의 구금과 부정부패 관련 형사처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부단한 노력 중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와 관련한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이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 부정부패법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위원회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이하 "Nazaha")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감시기관과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국의 조사권 및 공소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왕실 칙령에 따라 새로운 부정부패 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한 규정은 1996년에 공표된 반 뇌물법 (Anti-Bribery Law)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공무원에 선물 등 뇌물 제공과 관련한 왕실 칙령이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왕실 칙령이 별도로 공표되었습니다.

반 뇌물법의 개정은 2018년 7월 슈라 위원회 (Shoura Council)의 승인에 따라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존의 반 뇌물법의 많은 조항보다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개혁은 최근에 검찰 내에 설립된 반 부정부패 부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통상적인 사업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부정부패를 확실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의 뇌물 수수 (Bribery of public officials)

반 뇌물법은 주로 공무원 (public servants)에 적용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임원,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민간부문 직원/컨설턴트 및 은행·금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까지도 공무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혹은 정부 산하기구의 계약직/정규직
- 정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임명된 중재자/전문가

- 정부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수행을 위해 임명된 개인
-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고있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업
-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및 은행·금융기관의 직원 및 대표이사

반 뇌물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자 (bribe)는 본인 또는 제 3자를 위해 다음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품 (선물 포함)을 제공받는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특정 업무 수행 (\*실제로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로 간주함)

해당 공무원의 특정 업무 미수행 (\*실제로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로 간주함)

사전 계약 없이 해당 공무원의 공식 업무 미수행

당국으로부터 명령, 의사결정, 면허, 공급계약, 고용, 특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영향력 남용

해당 공무원의 요청, 추천, 알선의 결과로 특정 업무의 실행 또는 미실행

## 형벌 (Penalties and enforcement)

반 뇌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미만의 징역형 및/또는 SAR 100,000 (USD 27,500 / 한화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에서부터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또는 SAR 1,000,000 (USD 275,000 / 한화 약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벌과 더불어, 반 뇌물법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개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또는 SAR 1,000,000 (USD 275,000 / 한화 약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 뇌물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처벌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범죄자 (Recidivists)로 분류되며, 이전보다 더 막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 뇌물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강제 퇴직 및 최소 5년간 공직에 종사할 수 없으며, 뇌물수수와 연관된 모든 재정적인 혜택은 몰수됩니다. 또한 처벌의 한 방법으로써 뇌물수수와 관련된 판결을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 뇌물법은 내부고발자 등 뇌물수수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이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입증한 경우, 최소 SAR5,000 (USD 1,350 / 한화 약 150만원), 최대 몰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개별 범죄의 유형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의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부패 방지위원회 또는/및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뇌물수수와 관련한 조사는 예비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 연루자 소환 (summons) 및 구속 (arrest), 기소 (indictment), 심리 (trial), 공판 (settlement with government), 판결 (judgment)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유죄 여부는 해당 개인의 국적과는 무관하며 내·외국인 모두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뇌물수수로 인한 기업의 위험부담 (Exposure for corporate entities)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또는 일반 직원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위반 행위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기업 또한 제공된 뇌물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받거나 공공조달 또는 프로젝트 계약의 입찰이 금지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한은 최소 5년간 적용됩니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는 위반 행위 적발 이전에 관련 당국에 자백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이는 반 뇌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 뇌물법은 뇌물수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뇌물수수와 관련한 법적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은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선물 제공 및 환대 (Gifts and Hospitality)

선물 및 환대의 경우에도 반 뇌물법 적용대상이며,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목적으로 뇌물수수자에 제공되는 선물 또는 약속 모두 뇌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 과정에 있어서 식사 제공 등 적당한 선의 환대는 부정적인 의도가 없다는 전제 하에 뇌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선물 또는 환대 제공 시 주의해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내역을 문서화 해야합니다.



2015년에는 반 뇌물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에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칙령 (Rules on Gifts to Officials)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칙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습·관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현금으로 제공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관습·관례에 부합하는 수준 및 가격의 선물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선물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선물은 공공기관에 귀속되어 적당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직접 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한 가격 수준 (SAR 4,000 / USD 1,000 / 한화 약 120만원)의 선물이거나 소모성이 짙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Stock Market)



#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Stock Market)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걸프지역 내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Tadawul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Tadawul은 현지투자자와 고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주가변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의 약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를 제공하는 MSCI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신흥시장으로 격상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8년 3월에 FTSE Russell이 사우디아라비아를 2차 신흥시장으로 추가하면서, MSCI가 2019년 5월과 8월에 발간예정인 반기 신흥시장 보고서와 분기 신흥시장 보고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식지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 (Capital Market Authority; 이하 "CMA")은 외국인투자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참여장려를 위해 2014년에 일부 허가받은 해외기관이 Tadawul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고객사를 대신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위해 Tadawul을 개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 시장안정성 개선 및 주가변동성 축소
-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 전문성 제고
- 주식시장 효율성 증대 및 상장사의 실적 향상
-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
- Tadawul의 국제등급향상
- 주식시장 및 상장사에 대한 평가·연구수준 향상

2015년 CMA는 공식적으로 "적격 해외금융기관의 상장주식 투자관련규정 (Rules for Qualifie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 in Listed Shares)"을 공표하였고, 이는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GCC 국적을 보유한 개인·기업은 이미 Tadawul의 상장사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1월에 개정된 최신 규정에서는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외국인투자자 (Qualified Foreign Investors; 이하 QFI)로의 등록을 위한

절차, 요건, 승인 내역 등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장증권사가 QFI와 거래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QFI는 의결권, 이사회 임명권, 의결권 교환 등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Tadawul에 상장된 많은 증권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QFI는 Nomu라는 주식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Nomu는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나, Tadawul의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FI 등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평가는 CMA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CMA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규정에 언급된 평가 항목과 절차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QFI 적격심사를 위해 신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은행, 증권·금융회사, 투자기금, 보험사,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으로, CMA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표준에 준하는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 설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을 제외하고, 관련기관은 최소 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자금운용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QFI의 관계사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포트폴리오 관계자가 관리하는 펀드 또한 별도의 신청없이 QFI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투자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QFI는 Tadawul에 상장된 모든 주식·전환사채 (convertible debt)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전환사채의 총합은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FI의 투자는 본 규정 외에도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의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관련규정, 기타 규제기관 및 주식발행 기관의 규정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금융  
(Banking  
and Finance)



# 은행·금융 (Banking and Finance)

##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SAMA and banking business)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The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이하 "SAMA")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자 은행 규제기관입니다. 1966년에 제정된 은행규제법 (The Banking Control Law) 및 시행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핵심 법령이며, 해당 법에서는 '은행부문의 업무 (banking busines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를 통한 자금 납입, 예금계좌 개설, 신용장 및 보증서 발행, 수표 발행 및 자금 회수, 지급명령서 발급, 약속어음 및 이와 유사한 지급수단 발행, 할인, 환어음 및 기타 자금관련 서류 발행, 외환거래 등을 담당하는 사업."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은행부문의 업무는 CMA에서 규제하는 '증권관련 업무'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6월 28일, CMA의 이사회는 증권관련 업무의 규제내역 (Securities Business Regulations)을 승인하였고, 해당 내역은 증권 거래·관리·자문 및 위탁운용 등에 관해 CMA의 승인 취득을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샤리아 율법에 따른 거래 (Shari'ah compliant transactions)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치기본법 (Basic Law of Governance)에 따라 완전한 주권을 지닌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는 이슬람으로, Sunnah (선지자 Muhammad의 사상)와 더불어 신성한 코란 (Holy Qur'an)을 헌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샤리아 (Shari'ah) 율법을 구성합니다.

계약과 관련한 샤리아 율법은 별도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계약 해석 시 재량에 따라 샤리아 율법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법적 원칙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이 샤리아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 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슬람 금융상품이자 채권으로 잘 알려진 이자라 (Ijara), 금융리스와 유사한 선도 이자라 (Forward Ijara),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무다라바 (Mudaraba),

합자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일종인 무샤라카 (Musharaka), 무라바하 (Murabaha) 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주요 은행·금융 부문의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 은행·금융부문의 개혁 (Banking industry reform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주요 은행·금융 부문의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 **상사질권법 (Commercial Pledge Law):** 2018년에 공포된 본 법은 유동자산 등에 대한 담보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 **부동산저당법 (Real Estate Mortgage Law):** 해당 법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다루고 있으며, 저당권 이전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리파이낸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차 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대출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 **부동산금융법 (Real Estate Finance Law):** 해당 법은 부동산 금융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SAMA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업감독법 (Law on Supervision of Finance Companies):** 해당 법은 SAMA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금융리스법 (Finance Lease Law):** 해당 법은 자산의 리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임차인 (lessee)은 임대한 자산을 약정된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고, 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담보·보증 (Security creation and guarantees)

### 상사질권법 (Commercial Pledge Law)

상사질권법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시 폭넓은 선택권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동자산 (Movables):** 현재 및 미래 자산에 대한 권리: 이전에는 현존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담보권 설정이 가능했고, 현재 생산중인 기계 또는 향후 차입 예정인 예금 등 미래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상사질권법은 자산의 현존 유무에 관계없이



담보권 설정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래에 실현될 자산의 경우, 자산의 구매 또는 건설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또는 인보이스 상의 받을 채권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 상사채무에 대한 담보권 (Security for a Commercial Debt):** 상사질권법은 상사채무(Commercial Debts)의 보증을 위한 담보계약에 적용되며, 상사채무는 기업 또는 전문가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 질권 등기, 점유형 질권, 우선순위 (Registered Pledges, Possessory Pledges and Priority):** 상사질권법에 따라 담보권은 상사질권등기부(Unified Register of Commercial Pledges)에 등기되어야 하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특수한 유형자산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담보계약 시, 해당 담보가 등기되거나 담보권자 혹은 수탁자에게 유동자산의 점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한해 제 3자를 상대로 유효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고 및 원자재의 경우, 부동산담보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여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일이 더 빠른 담보권자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만약 담보권자 간에 별도 계약이 없는 한, 질권계약에 기한 담보권자가 부동산담보 혹은 기업담보의 담보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투자부 (Ministry of Commerce & Investment; 이하 "MOCI")는 상사질권등기부에 관한 규정 (Commercial Pledges Unified Register 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예금계좌에 대한 질권 (Pledge over Bank Accounts):** 상사질권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존하는 예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치될 예금에 대해서도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권 설정일 기준으로 예금 잔액 및 추후 예치될 금액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예금액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질권설정자는 예금계좌를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담보 (Floating Charge):** 상사질권법은 담보자산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를 부동담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은 담보자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 및 원자재에 대해서도 부동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자를 상대로 부동담보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동담보가 반드시 상사질권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자산의 재고와 수량에 대해 매월 보고해야 하고, 담보자산의 수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업 담보권 (Pledge over Economic Enterprise):** 기업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담보권은 실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상대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에 대한 담보권은 영업권, 고객정보 등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회계장부 등 유형자산 및 실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권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판매 목적의 재고는 담보권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증권 질권 (Pledge over Securities):** 상사질권법은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지분은 상사질권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사질권등기부의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타 비상장 증권의 경우에도 특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상사질권등기부의 등기를 요합니다.
- 질권 설정 계약 (Pledge Contract):** 상사질권법은 질권 설정 계약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계약서에 자산의 현존 여부, 유형, 미래 자산의 실현 예정일, 예상 가치를 명시해야 하며,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시,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담보권 설정 최대한도 및 채권의 만기일 또는 예상 만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권 (Mortgage of Real Estate in Saudi Arabia)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동산 저당법 (The Registered Real Estate Mortgage Law)을 공표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 금융의 획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현지 은행은 지정된 법인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 (Ifragh)으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 (obligor)가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은행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기존의 채무자에 반환되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저당법은 채무자 (borrower)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이 등기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인 담보대출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저당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이 담보하는 부채는 자산매각시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저당권은 특정 부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에 대해서도 설정 가능하며, 이 때 저당권 계약 상에 담보로 설정된 부채의 금액 또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 (mortgagor)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및 기타 수익을 지속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 (mortgagor)와 저당권자 (mortgagee)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채무 변제, 기타 비용 및 수수료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5년 이상의 임대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에는 1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 때는 제 1 순위 담보권, 제 2순위 담보권 등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SAMA는 담보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고, 부동산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공문을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 공증 절차 준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중지, 현재까지 은행 및 금융기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원상 복구, 고객에 대한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당권 등기를 거부하는 공증인을 SAMA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SAMA의 공문에 이어, 공증인도 부동산 담보권 등기를 위해 은행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은행은 담보권 설정 시, 해당 채무가 샤리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래 (Tawarruq 또는 Murabaha)임을 명시하는 레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SAMA는 최근에 부동산 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Ijara와 Murabaha 표준양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발전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및 주택부문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보증 (Guarantees)

보증은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래 유형이며, 개인·기업이 채무자로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제 3자에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기업 모두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한 확신을 주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주채무 (Primary Obligations):** 보증인 (guarantor)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primary obligor)의 채무에 종속된 의무입니다. 채권자 (creditor)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보증인 또한 보증채무에서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채무가 무효가 되면, 해당 보증 또한 무효화 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가 이슬람 금융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증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례로, 금융파생상품 계약은 샤리아 율법 상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렇듯 주채무가 너무 불분명한 채무인 경우 그 보증채무의 집행도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요구 (Demands):** 보증 계약 하에서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에서는 팩스, 유선, 은행 전산망 또는 전자적으로 송신된 지급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요구 등 보증인과의 모든 소통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집행 (Enforceability):** 채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에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인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자발적인" 의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금융분쟁과 관련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분쟁위원회 (Banking Disputes Settlement Committee)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권리행사 지연 시, 이를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보증 (All Monies Guarantees):** 특정보증 (specific guarantees)과 근보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 (현재 발생된 채무 및 미래에 발생할 채무 포함)를 보증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보증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샤리아 율법의 핵심원칙은 계약내용이 불확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 적용 시,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증내역이 특정 부채 또는 금액에 대한 보증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계약 상에 보증기간 및 최대 보증한도를 명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약속어음 (Promissory Notes):** 채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보증과 유사한 약속어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상업서류법 (Law of Commercial Pape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며, 가장 빠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는 직접 집행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집행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약속어음이 어떤 유형의 거래를 위해 발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수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집행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보증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거래 시, 약속어음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약속어음의 지급 및 재발행이 보증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가받지 않은 해외 채권자도 약속어음을 집행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집행은 채무자의 유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역보증 (Upstream Guarantees):** 역보증은 자회사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역보증 허용범위는 아직까지 논쟁 대상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 (KSA Law No. 999 of 2015) 제 10조를 보증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부터 창출된 수익만 주주에 배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두가지 해석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본 조항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보증 계약에 따른 지급이 순이익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금지된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입장은 보증 계약에 따른 지급행위가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가 보증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므로, 채권자는 역보증의 계약 포함 여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법 제10조는 자회사간의 보증 (cross-stream guarantees)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보증 (downstream guarantees)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산법 (Insolvency)



# 파산법 (Insolvency)

기업, 자문 컨설턴트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당사자는 현대적인 파산법 부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당면해 왔습니다.

- 채무의 무질서한 회수로 인해 일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상환이 누락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음
- 기업회생절차 (Workouts)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
-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 가능성 감소
- 상대방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
- 다양한 법적 요구로 인한 소송 증가
- 채무자가 파산 이전에 자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여 채권자에 채무상환 시, 공정가치보다 낮거나 아예 가치가 훼손됨

MOCI는 2015년에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이어, 2016년에는 파산법 (Bankruptcy Law) 공표 계획과 해당 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파산법은 2018년 2월 관보 (Official Gazette)에 게재되었으며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파산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규 파산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개인·기업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된 인가받은 기업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기업

신규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도산 시, 기업 청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예방적 합의 (Preventive Settlement):** 채무자는 법원에 예방적 합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의 지급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90일 동안 채무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고 총 18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의 중단 기간동안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클레임 및 모든 집행명령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 **재무 구조조정 (Financial Restructuring):** 해당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임명한 재무 구조조정 담당관의 감독 하에 본인의 사업에 대한 재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담당관은 재무 구조조정 기간 동안 공정한 구조조정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사업활동을 감독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무 구조조정 계획은 법원과 전체 채무의 2/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법원 승인 이후 모든 채권자에 해당 계획이 적용됩니다.
- **기업청산 (Liquidation):** 신규 파산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므로, 기업청산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청산은 청산인 (liquidation trustee)의 감독 하에 파산한 기업의 자산 매각 및 매각 후 발생한 수익을 채권자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산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매각한 후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 관련 수익을 분배합니다. 기업청산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남은 자산이 없을 시, 법인은 소멸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파산법은 채권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채 (higher priority debt)가 가장 낮은 순위의 부채 (lower priority debt)보다 빨리 변제됩니다. 채권자를 사취하거나 주주와 채권자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파산법에 따라 파산등기부 (Bankruptcy Register)가 운용될 것입니다.

# 부동산 (Real Estate)



# 부동산 (Real Estate)

##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 소유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부동산의 소유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만 제한되지만, 이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cca와 Medina 부근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GCC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업 (모든 주주가 GCC 국적자로 구성된 기업)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거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더라도, 해당 지분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는 SAGIA의 외국인투자면허를 요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대리행위 금지법 (anti-fronting law)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우디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시 주의를 해야합니다.

SAGIA의 외국인투자면허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GCC 국적이 아닌 기업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Mecca와 Medina 또는 왕실 칙령에 의해 제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 전문적 (professional), 기술적 (technical) 또는 경제적 (economic)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 특정 프로젝트에 의한 개발 목적 부동산
- 허용된 프로젝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될 부동산
- 사우디아라비아에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개인의 거주 목적 부동산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지만,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 부동산 취득 및 등기 (Titles and the registration system)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토지 거래 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국 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관할지역의 부동산 관련부서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토지 식별 및 소유권, 조사,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이러한 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추적하는 권리증서제도 (deeds system) 및 공증인이 소유권의 이전을 완료하고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경제 신도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제 신도시 (Economic Citie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현재 많은 경제 신도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젤다 근방의 서해안 지역인 Makkah에 위치한 킹압둘라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Medinah 지역에 위치한 지식·경제도시 (Knowledge Economic City), 북부 Ha'il 지역에 위치한 압둘아지즈 빈 모사예드 왕자 경제도시 (Prince Abdulaziz bin Mousaed Economic City) 그리고 남서부에 위치한 자잔 경제도시 (Jazan Economic City) 등이 있습니다.

경제 신도시 관련 당국은 경제 신도시 내에 설립 예정인 모든 외국기업의 등록, 외국기업 명의의 부동산 권리 증서의 등기, 사업면허 발급, 냉방·창고·물류 등의 용역 제공업체 승인 및 면허 발급을 위한 규정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 (REITs)

2016년 CMA는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여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Tadawul에서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 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aded Funds; 이하 “REITs”)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REITs의 관리, 운영,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을 보유한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REIT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자도 Tadawul에서 REITs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선분양 제도 (Off-plan sale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 분양 규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수분양자 및 부동산 개발회사의 권리보호
-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 확보
- 투기 및 부동산 거품 (real estate bubbles) 방지
- 부동산 보유 비용 감소
-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부동산 공급량 증대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선분양 이전에 주택부 (Ministry of Housing)의 선분양 위원회 (Off-Plan Sale Committee)에 관련 프로젝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취한 분양 대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에스크로 계정 (escrow account)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감리자협회 (Organisation of Saudi Engineers)에서 인가받은 컨설턴트가 완공 전까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대한 분기별 기술 보고서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담보권 (Mortgage of real estate)

피담보채무의 우선 변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에 공표된 부동산 저당법은 용자기간 동안 채무자가 은행이 지정한 기관에 부동산의 권리증서를 양도하도록 했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저당권의 설정을 위해서는 피담보채무가 반드시 샤리아 율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소유 (Jointly owned property)

새롭게 공표된 법은 주택 소유자 조합 (homeowners' associations)의 설립과 공동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소유자 조합을 상대로 한 해당 법의 적용가능여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동소유자산의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 (Ministry of Housing)는 주택소유자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주택소유자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범사례가 담긴 규정을 발간했습니다.

## 건물의 부분적 소유 (Fractional ownership)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파트 등 건물의 부분적 소유를 관할하는 집합건물소유법 (System of Ownership of Units Law)을 공표했으며, 해당 법은 건물을 여러 유닛으로 분리하여 각 유닛에 대한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2018년 1월 1일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상업용 또는 거주용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되지만, 현재 점유 중인 상업용 건물의 매각이 사업의 매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차원의 계획 (Government initiative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동산 부문의 개발을 장려하고, 자국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차원의 계획을 시도 중이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부동산 개발회사 서비스센터 (Etmam), 임대 서비스 네트워크 (Ejar), 부동산 관련당국 (Regal Estate Regulatory Authority; 이하 "REGA"), 유휴지/미개발 토지 관련세법 (Idle Land Tax Law)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회사 서비스센터 (Etmam):** 부동산 개발회사 서비스센터 (Developers Services Centre; 이하 "Etmam")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도 하에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여러 단계에 걸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tmam은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진행 시, 토지구획 승인, 건축허가 발급, 선분양 관련면허 발급, 완공증명서 발급 등 면허 발급 및 승인 과정에서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임대 서비스 네트워크 (Ejar):** 임대 서비스 네트워크 (이하 "Ejar")는 임대인 및 외국인인 포함한 임차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여 임대인의 실제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임대를 위해 인·허가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을 검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계약갱신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임대료 조정을 위해 공모한 중개인 및 Ejara에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Ejara 감독팀에 위반 내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당국 (REGA):** REGA는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부문 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REGA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인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부동산 매각 및 임대 등과 관련한 가격지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장려를 위해 REGA는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규제기관의 관행을 비교·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REGA는 부동산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술 및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유휴지/미개발 토지 관련세법 (Idle Land Tax Law):** 유휴지/미개발 토지 관련세법은 미개발 도시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white lands)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White Lands Tax Law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세법은 유휴지/미개발 토지 개발을 통해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낮추고자 하며, 유휴지/미개발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토지 가치의 2.5%로, 연 단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세법은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택보급율을 높이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기술혁신이 자국 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사우디 비전 2030에서도 기술·혁신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보·통신 부문을 육성하고 경제발전의 디지털화를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인해 기술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일반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이를 위한 절차 활성화, 통신채널의 다양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임으로써 전자정부 (e-government)의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30년까지 소매거래의 총 80%를 전자상거래 (E-commerce)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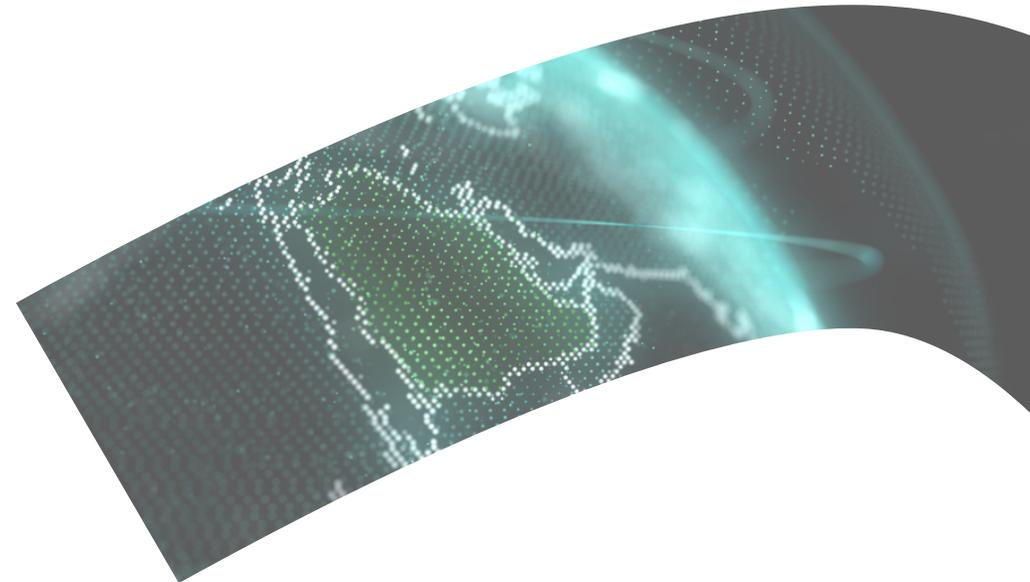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기술원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 Technology; 이하 "KACST")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Badir Program은 기술에 기반한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주도 프로그램입니다. Badir Program으로 인해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전자상거래, 통신,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KACST와 같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500억 달러 규모의 기술중심 대도시 설립계획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발표된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장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념해야 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범죄 규제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화된 데이터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와 관련한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령은 부재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준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용가능한 정보보안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부문에 적용 가능한 SAMA사이버범죄 관련 체계 (SAMA Cyber Security Framework) 등 부문별로 특화된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IT 서비스의 아웃소싱과 관련한 법은 없지만, SAMA에서 제정한 아웃소싱 절차 규정 (Rules for Outsourcing Processes) 등 부문별로 특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상수익에 기반한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실행을 위해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이하 "CITC")는 원격 통신 및 정보기술 부문을 관할하는 규제기관으로, 면허 발급 및 영업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ITC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체계 (Cloud Computing Regulatory Framework)를 발표했습니다.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과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 및 협약의 서명국입니다.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설립 협약 (가입일: 1982년 5월 22일)
-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가입일: 2004년 3월 11일)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가입일: 2004년 3월 11일)
- 특허권 거래 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가입일: 2012년 5월 29일)
- 특허협력조약 (가입일: 2013년 8월 3일)
- 특허법 조약 (가입일: 2013년 8월 3일)

## 상표권 (Trademarks)

2016년 부로, 2002년에 공표된 상표권법 (Trademarks Law)은 2014년에 제정된 GCC 상표권법 (GCC Trademarks Law)으로 대체되었으며, GCC 상표권법은 GCC 회원국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간의 상표권법의 일원화를 목표로 공표된 법입니다.

GCC 상표권법은 상표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름, 단어, 서명, 글자, 형상, 도안, 로고, 제목, 특징, 도장, 사진, 인쇄물 또는 특정 재화 및 용역과 특정 시설의 구별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마크를 상표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목소리 또는 냄새도 상표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일 상표권을 다수의 클래스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마드리드협약 (Madrid Protocol)의 가입국도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표권 출원 신청자 이름 및 주소 (\*기업의 경우, 실제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상표권 등록을 희망하는 재화 및 용역

- 상표권 사본
- 상표권 출원 신청 및 등록 전 과정을 위임 시, 해당 에이전트의 위임장 공증본

사우디아라비아 내 상표권 등록은 MOCI에서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SAIP")으로 해당 업무가 이전될 예정이며, SAIP는 MOCI의 NTP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시, 관련 당사자에 벌금 및 징역형과 함께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부과될 수 있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재화 및 서류 (수입된 품목 포함)에 대해서 가압류 (precautionary measure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Copyright)

2003년에 공표된 저작권법 (Copyright Law)은 문학, 예술·과학,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표현수단, 저술작업 등을 보호하는 법으로, 번역, 편집, 데이터베이스 등 본래 작업에서 파생된 창작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별도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수명과 동일하며, 창작자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방송물의 경우, 첫 방영 이후 2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권법은 벌금, 위반 제품 압수, 폐업, 징역 등 저작권 침해 시의 형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저작권 협정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회원국으로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특허 (Patents)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기술원 (King Abdul-Aziz 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KACST")은 특허법의 운용을 관할합니다. KACST 산하 특허 관련부서 (General Directorate of Patent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청 (Patent Office)으로서 특허, 산업디자인, 식물종,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등 특허 신청 및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해당 업무는 SAIP로 이전될 예정이며, 향후 SAIP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품은 반드시 창의적인 단계를 거친 신규 창작물이어야 하고, 다양한 산업부문에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품의 사용법은 일반적인 기술을 지닌 사람도 이해가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참신성 (Novelty)은 절대적 평가 요소이며, 해당 발명품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 참신한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특허출원이 승인되면, 해당 발명품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는 특허와 관련하여 매년 일정 금액의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에 따라 다음의 발명품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식물·동물 또는 식물·동물의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기법 (\*단, 미생물, 무기질을 활용한 기법은 예외일 수 있음)
-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진단, 치료, 수술기법
- 과학적 가설 및 수리상의 이론
-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구조, 규칙, 방법
- 상업적 개발의 수단으로, 공공질서 또는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창작물
-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시, 인류, 동·식물, 환경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창작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허출원 신청자 및 발명자 이름 및 주소
- 자국 또는 해외 특허출원 상세내역
- 해당 특허의 요약본 및 상세내용 (영문 및 아랍어 번역본 모두 제출)
- 도안 2부 (\*1부는 별도의 번호표기 없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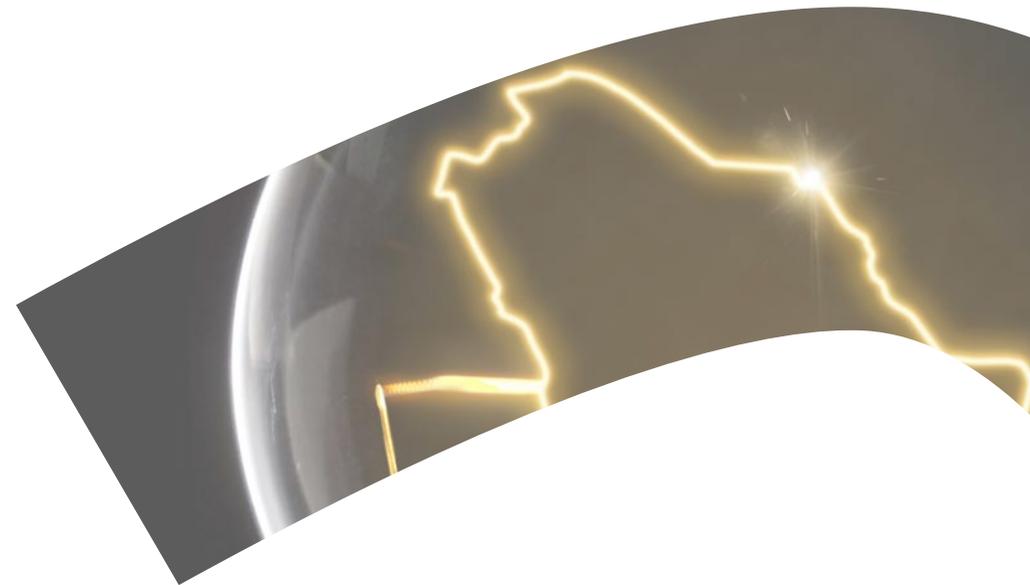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 신청 이후 한달 이내에 위임장과 양도증서 (Deed of Assignment)를 제출해야 하며, 두 서류 모두 신청자가 체류중인 국가 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허 관련하여 조약우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 특허출원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에 가입함에 따라 해외 발명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특허출원 신청절차와는 별도로, GCC 특허사무소 (GCC Patent Office)를 통해 GCC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CC 특허제도는 특허출원 당사자가 GCC 회원국에서도 동일하게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1998년 리야드에 설립된 GCC 특허사무소는 과학·기술 부문의 발전과 기술 이전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GCC 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GCC 특허제도는 PCT 및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GCC 특허사무소는 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관련내용을 준수합니다. GCC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GCC 국가가 파리협약 회원국이므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체계 (Saudi court system)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일반 법원 (Ordinary Judiciary)
- 행정 법원 (Administrative Judiciary)
- 사법위원회 및 준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s and Quasi-Judicial Committees)

## 일반 법원 (Ordinary Judiciary)

- 일반 법원은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 법원 (Appeal Court), 대법원 (High Cou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법원의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1심 법원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관할하며, 해당 분쟁을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일반 법원 (General Court)은 다른 법원, 공증 기관 또는 행정법원 (Board of Grievances or Administrative Court)의 관할권을 벗어난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담당합니다.
- 형사 법원 (Criminal Court)은 모든 형사사건을 관할합니다.
- 가정/호적 법원 (Personal Status Court)은 가족문제 및 상속, 호적 등과 관련한 분쟁을 관할합니다.
- 상사 법원 (Commercial Court)은 상사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 노동 법원 (Labour Court)은 노동 분쟁을 담당합니다.
- 항소 법원 (Appeal Court)

사우디아라비아는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항소 법원을 두고 있으며,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합니다.

## 대법원 (High Court)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개의 대법원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사리아 율법 및 사리아 율법에 부합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행정 법원 (Administrative Judiciary)

행정 법원 (Board of Grievances 또는 Administrative Court)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관할합니다.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 법원도 3심제를 고수하여, 1심 법원 (First Instance Administrative Court), 항소 법원 (Appeal Administrative Court), 대법원 (High Administrative Court)로 구성됩니다.

## 사법위원회 및 준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s and Quasi-Judicial Committees)

준사법위원회 (Quasi-Judicial Committees)는 특정 유형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전문위원회로서, SAMA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Banking Disputes Committee), CMA 산하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 (Committee for Resolution of Securities Disputes),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관세분쟁위원회 (Customs Committee for Customs Disputes) 등이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상급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준사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 (Arbitration)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 또는 소송의 선택 여부는 개별 분쟁별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해당 분쟁이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공식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의 경우, 준거법, 언어, 판정의 집행 등에 있어 소송에 비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과의 분쟁 시,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의 별도 승인 없이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새로운 중재법 (Arbitration Law)을 공표했으며, 해당 법은 중재인 선임 및 중재 합의와 관련한 필수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이 확정되면, 중재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 기해서만 항소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중재판정의 집행 (Execution of judgements and awards)

2012년에 국내 및 해외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샤리아 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판결의 상호 집행에 관한 아랍연맹조약 또는 GCC 국가간 판결의 집행 등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결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관할하는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의 가입국입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샤리아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التميمي و مشاركوه  
ALTAMIMI & CO.

Advocates & Legal Consultants للمحاماة والاستشارات القانونية



@AlTamimiCompany



Al Tamimi & Company

[www.tamimi.com](http://www.tamimi.com)